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315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
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2025. 10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23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박정환 의원 등 5명
- 발의일자: 2025. 10. 2.(목)
- 회부일자: 2025. 10. 10.(금)
- 검토기간: 2025. 10. 10.(금) ~ 10. 17.(금)

2. 제정이유

-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
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(안 제1조,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라.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마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으로 인해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둔 채 고립 생활을 하여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는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,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5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본 제정조례안은 본인의 비위생적인 환경과 건강상의 문제는 물론, 화재 위험, 악취 등 이웃 주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가구를 청소하고, 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행정적·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서비스 연계방안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, 관련법령 등에 부합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생 략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~차. (생 략)

3.~7. (생 략)

□ 사회보장기본법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·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제23조(사회서비스 보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, 사회참여,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

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27조(민간의 참여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·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1. 자원봉사,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

2.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사업

3.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
제4조(기본원칙)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,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·투명·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,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·단체·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

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(위기가구의 발굴)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(이하 이 조에서 “위기가구”라 한다)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
2.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

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